

[별표 5]

과태료부과기준(제21조제3항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과태료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제2호 각목의 과태료 부과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.

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,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일과 그 처분후 다시 적발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2. 개별기준

(단위 : 만원)

위 반 행 위	해당법조문	과태료금액
가. 법 제6조, 제7조제3항,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,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(1) 1차 위반시 (2) 2차 위반시 (3) 3차 위반시	법 제40조제1항제1호	50 100 200
나.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, 행정처분 또는 휴업·폐업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알린 자 (1) 1차 위반시 (2) 2차 위반시 (3) 3차 위반시	법 제40조제1항제2호	50 100 200
다.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	법 제40조제1항제3호	200
라.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	법 제40조제1항제4호	200
마.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	법 제40조제1항제5호	200
바.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3일 이내에 보수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알린 자	법 제40조제1항제6호	200
사. 법 제15조제6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용 및 하자보수내용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	법 제40조제1항제7호	200

아.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리관계 서류를 인수·인계하지 아니한 자	법 제40조제1항제8호	200
자.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한 자 (1) 1차 위반시 (2) 2차 위반시 (3) 3차 위반시	법 제40조제1항제9호	50 100 200
차.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결과보고서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한 자	법 제40조제1항제10호	200
카.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한 자 (1) 1차 위반시 (2) 2차 위반시 (3) 3차 위반시	법 제40조제1항제11호	50 100 200
타.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(1) 1차 위반시 (2) 2차 위반시 (3) 3차 위반시	법 제40조제1항제12호	50 100 200
파. 법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 및 감리를 함께 수행한 자	법 제40조제1항제13호	200